

창립관련사항보고서

아래 본인은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 (“신설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바이오 사업부문(“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본건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되는 회사임.

사업목적:

1.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3. 의약품 원료, 중간체, 완제품의 용역 및 수탁제조업
4.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무역업
5. 보툴리눔 독소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6. 보툴리눔 및 기타 물질의 검출 및 진단키트 제조업
7.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
8. 신약개발 사업
9.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0.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1. 동물약품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12.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13.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15. 유헤스케어 사업
16. 연구개발, 연구개발 자문 및 연구개발 용역업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9.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2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알선업

2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4,000,000주
1주의 금액 : 금500원
자 본 금 : 금2,000,000,000원

2. 본인은 관련 분할계획서(“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19일 개최된 분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고, 해당 분할계획서에서 정하고 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설명하여 승인 받은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2021년 3월 31일 분할계획서를 수정하고 공시하였음.
3.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이에 귀속되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는 분할기일(2021년 4월 1일)에 신설회사로 이전됨.
4. 분할의 결과 신설회사는 4,0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분할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함.
5. 분할계획서에 예정된 바와 같이 신설회사의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기에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보고함.

일자: 2021년 4월 1일

설립위원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윤 성 태